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

(주) 신한은행 귀중

신청일 : 년 월 일

1. 공통 필수정보

| | | | | | |
|-----------|--------|----------------------|---|---|---|
| 가입자명 | (인/서명) |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 년 | 월 | 일 |
| 퇴직연금 계좌번호 | | | | | |

2. 중도인출 신청 정보

| | | | | |
|----------------|--|---|----------------------|---|
| 중도 인출 사유 | 일반 사유 |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input type="checkbox"/>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input type="checkbox"/>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 |
| | 부득이한 사유 | <input type="checkbox"/>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천재지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나) <input type="checkbox"/> 사회재난(특별재난지역)으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input type="checkbox"/>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혹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 부득이한 사유 필수확인정보 | - 사유발생일자*: (년 월 일) - 저율 분리과세 대상 금액 : [단, 3개월 이상 요양 또는 사회재난지역의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치료 해당] (원) * 요양 또는 입원치료(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발급일자”),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파산 (판결문 상 “결정일자”) |
| 신청금액 | <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원) ※ 일부중도인출 신청금액은 매수잔고금액의 90%를 초과할 경우 전부인출만 가능합니다. | | | |
| 입금계좌 | 입금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

[의료비 산정기준 (「소득세법 시행령」제 118조의5제1항 및 2항에 따른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간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
-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미포함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저율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시행령 제20조의2)]

- 적용사유** : 중도인출 사유 중 무주택자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또는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가)에 의한 피해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
- 적용조건** :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단, 3개월 이상 요양 또는 사회재난지역의 재난으로 인한 15일 이상 입원치료의 경우 “의료비 영수증” 또는 “간병료& 간병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영수증 또는 “휴업/휴직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적용소득(세율)** : 퇴직소득(퇴직소득세율 x 0.7), 가입자부담금 세액공제분 및 가입자부담금 이자(연금소득세율, 3~5%)
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 내에서 사유발생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받지 않음.

※ 원리금보장상품은 중도인출에 의한 중도해지 이자가 발생합니다. 특별중도해지와 일반중도해지의 이자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상품별로 특별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는 중도인출 사유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상품의 최신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입자 부담금(적립금포함) 소득(세액)공제 여부

가입자부담금(적립금) 있음 가입자부담금(적립금) 없음 ※ 가입자부담금(적립금)이 있는 경우 아래에 기재요망

| | | |
|--|---|--|
| 작성방법 | ※ 2012년 12월31일 이전 퇴직하여 급여이전 한 계좌의 경우는 ①번 해당하는 경우 기재하여야 하며, 2013년 이후 퇴직하여 급여이전 한 계좌의 경우는①, ②번에 해당할 경우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 |
| 소득공제내역 | ① | 2012.12.31 이전 가입자부담금+가입자적립금액 중 소득공제받은 금액 (원) |
| | ② | 2013. 1. 1 이후 가입자적립금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받은 금액 (원) |
| ※ 소득(세액)공제한도 : 2015년 이후 납입한 가입자부담금은 연 7백만원한도/ 2015년이전 납입한 가입자부담금은 연 4백만원한도 ※ 납입한 가입자부담금(적립금)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가입자부담금 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액에 기재된 금액은 2012.12.31 이전인 경우 퇴직소득세로, 2013.1.1 이후인 경우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소득(세액)공제액이 없는 경우, 해당 가입자부담금의 원금은 비과세 적용되므로 증거서류를 제출하여 정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4. 무주택 서약서 (무주택자 주택구입 또는 무주택자 주거목적 전세(보증)금으로 중도인출 신청하는 경우 기재)

본인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일 현재, 본인 소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임을 확인합니다.

가입자명 _____ (인/서명)

5. 전세(보증)금 중도인출 확인서(무주택자 주거목적 전세(보증)금으로 중도인출 신청하는 경우 기재)

현재 IRP계좌에서 전세(보증)금으로 중도인출을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퇴직급여 수령 후 1회만 가능)

가입자명 _____ (인/서명)

| | |
|---|--------|
| 본인은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합니다. (세대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재.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 (인/서명) |
|---|--------|

6. 실손의료비 수혜 관련 확인서(의료비 중도인출 신청하는 경우 기재)

중도인출 신청시 제출한 의료비 내역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대한 요양(치료)비용으로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확인하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해당 질병(부상)으로 인한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보상 여부는 아래 같음을 확인합니다.

실손의료비보험 수혜사실 있고(수혜금액: _____ 원) 제출한 서류상 금액 이외에는 다른 수혜사실이 없음

실손의료비보험 수혜사실 없음

, 본인은 중도인출 신청 관련 필요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은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실손의료보험 수혜사실이 있는 경우 수혜금액을 제외하고, 의료비가 연간임금총액의 1/8을 초과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_____ (인/서명)

| |
|------|
| 본인확인 |
| |

| | | |
|-----|-----|-----|
| 담당자 | 확인자 | 지점장 |
| | | |



[제출서류 안내]

- 세부내용별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전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유 | 제출 서류 | |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공통 증빙서류]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1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자치단체-재산세(주택)으로 발급 -매수(임차)예정지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 [주택매매] 부동산 매매계약서 [신규분양] 분양공급계약서 [오피스텔]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 & 재산세(주택)과세변동신고서 [주택신축] 건축설계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류, (신축)토지등본 [경매취득] 매각허가결정문, 부동산표시별지 [임대후분양전환] 분양전환계약서 |
|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 ▷ 주택구입 중도인출 신청가능일 -계약일~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1개월 내 ▷ 주택임대차 중도인출 신청가능일 -계약일~잔금일부터 1개월 내 | [신규임대차] 주택임대차계약서 [갱신임대차] 갱신 전 주택임대차계약서 & 갱신 후 주택임대차계약서 [공통] 잔금지급 후 신청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인 없는 경우 : 잔금입금증 - 중개인 있는 경우 : 잔금영수증 |
| 본인,부양가족 6개월이상 요양 | 6개월이상 요양 | 진단서 or 소견서 or 장기요양인정서(6개월 이상 요양필요 명시) |
| | 의료비 지출 | •중도인출시점 직전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증빙서류(진료비 계산서 등) •의료비 가입자부담 증빙서류(신용카드 결제내역, 현금영수증 등) |
| | 부양가족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 | ▷ 신청가능일 : 요양시작일 ~ 요양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 ▷ 신청가능조건 : 6개월이상 요양 필요 & 연간임금총액의 1/8초과하여 의료비 지출 | |
| 과거 5년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인회생] | •개인회생개시결정문, 변제인가결정문(확정증명원), 법원통지서 중 택 1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캡처화면 →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면책/복권된 경우 중도인출신청 불가 |
| | [파산선고] | •파산선고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캡처화면 → 파산절차가 폐지/면책/복권된 경우 중도인출신청 가능 |
| ▷ 신청가능일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 파산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 |
| 재난으로 피해 를 입은 경우 | [공통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or 자연재난피해 신고서에 따른 행정기관 피해조사자료 ▷ 신청가능일: 피해발생일부터 3개월내 | [물적피해] -주거시설 반파·전파·소실 확인되어야 함 -(피해당사자기준)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피해당사자가 부양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인적피해] -(부양가족) 실종증명서 또는 실종증빙관련 서류 -(본 인) 입원사실확인서 또는 진단서 → 15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함이 명시되어야 함 |



☞ 지방세 세목별 (未)과세증명서 발급안내 ☜
 주민센터 방문 후 반드시 “단위: 전국자치단체”, “항목: 재산세(주택)” 발급요청
 위택스 사이트 접속하여 발급 가능(사이트 주소: www.wetax.go.kr)

1. 견양 <① 지방세 세목별 未과세증명서> 발급 신청(반드시 『전국자치단체』 and 『재산세(주택)』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 무주택자인 경우만 <① 지방세 세목별 未과세증명서>의 견양처럼 발급 가능
2. 견양 <① 지방세 세목별 未과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면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
 - ▶ 과거 주택을 보유하였으나 중도인출신청 이전 주택처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 (등기부등본 소유권이전 확인)

견양 ① 지방세 세목별 未과세증명서 (무주택인 경우)
 ※ “재산세(주택)”항목에 대하여 “전국자치단체”로 발급 요망 ※

- ▶ 발급일 확인
 - BPR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발급월 확인
 - 1~6월 : 전년도분만으로도 가능
 - 7월 : 전년도분 + 당해년도분
 - 8월~12월 : 당해년도분만으로도 가능
- ▶ “납세증명서(지방)”는 납세에 대한 단순 영수증으로 징구 불가

견양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일 이전 주택처분사실이 확인된 경우)

- ▶ 발급일 확인
 - BPR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발급월 확인
 - 1~6월 : 전년도분만으로도 가능
 - 7월 : 전년도분 + 당해년도분
 - 8월~12월 : 당해년도분만으로도 가능
- ▶ 세목 확인
 - ‘재산세(주택)/주택세’ 존재 여부만 확인
 - 기 재산세(주택) 납부 내역 존재하더라도, 처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처리 가능
- ▶ “납세증명서(지방)”는 납세에 대한 단순 영수증으로 징구 불가

| 세 목 | 년 도 | 기 분 | 과세연도 | 세 액 | 납 납 |
|-----------|------|-----------|--------|----------|-----|
| 재산세(주택) | 2016 | 월거분(07월분) | | ₩75,320 | |
| 지방소득세(주택) | 2016 | 월거분(07월분) | | ₩9,500 | |
| 지방소득세 | 2016 | 월거분(07월분) | | ₩9,510 | |
| 소 계 | | | | ₩90,330 | 환납 |
| 재산세(주택) | 2016 | 월거분(08월분) | | ₩75,320 | |
| 지방소득세(주택) | 2016 | 월거분(08월분) | | ₩9,500 | |
| 지방소득세 | 2016 | 월거분(08월분) | | ₩9,510 | |
| 소 계 | | | | ₩90,330 | 환납 |
| 지방소득세(주택) | 2016 | 상교분(01월분) | | ₩204,370 | |
| 지방소득세 | 2016 | 상교분(01월분) | | ₩2,310 | |
| 소 계 | | | | ₩206,680 | 환납 |
| 지방소득세(주택) | 2016 | 상교분(01월분) | | ₩110,810 | |
| 지방소득세 | 2016 | 상교분(01월분) | | ₩3,240 | |
| 소 계 | | | | ₩114,050 | 환납 |
| 합계연회세(주택) | 2016 | 상교분(05월분) | 018063 | ₩9,000 | |

